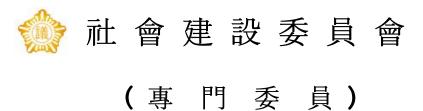
영등포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2009. 7. 2.





「大金」 大金 大金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6. 23.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자전거정비소를 무료로 운영하되 부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품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를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전거정비소를 경우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 현행 조례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 범위를 "자전거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로, 영롱이자전거의 이용자 범위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자전거대여소에서 영롱이자전거를 대여할 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롱이

자전거의 이용자 범위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로 확대하고자함.(안 제2조제5호)

●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되, 자전거 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을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관련법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서초구, 노원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전거정비소 운영 시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료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비용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 및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며, 관련용어의 정의를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2.

보고자:이 남 식